

1. 개정이유

자동차소유자가 정비업소 방문 없이 전조등의 전구교환 및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업의 제외사항을 확대하여 자동차소유자의 정비 편의 증진

2. 주요내용

전조등의 전구교환 및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를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추가(안 제13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2조제3호 중 “전조등 및 속도표시”를 “속도표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
별표 9 제1호바목의 기호(○) 및 같은 표 제2호나목(7) 기호(○) 중 “전
조등”을 각각 “전조등(전구교환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2조(정비업의 제외사항)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. 다만,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 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 한다.	제132조(정비업의 제외사항) 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배터리 · 전기배선 · 전구교환 (<u>전조등 및 속도표시</u> 등을 제 외한다) 기타 전기장치(고전 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)의 점 검 · 정비	3. ----- -- <u>속도표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자동차 <u>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무선</u> <u>업데이트</u>